

법원, 동방신기 멤버 3명 독자활동 보장해야

김성희 · 입력 2009. 10. 27. 19:47 · 수정 2009. 10. 27. 19:47

[JES 김성희]



법원이 동방신기 멤버 3명의 독자활동에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부장판사)는 27일 동방신기의 멤버 3명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일부 조항이 선량한 풍속에 반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거나 효력이 소멸됐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며 "본안소송 판결까지 SM엔터테인먼트가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연 등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청인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개별합의를 통해 그룹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 활동에 따른 수익 배분 등은 가처분 단계에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전속계약 효력의 전면적인 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동방신기의 시아준수·영웅재중·믹키유천 등 3명은 지난 7월 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팬들을 놀라게 했다. 이들은 당시 13년이라는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계약을 의미하고 계약 기간에 음반 수익 배분 등에 있어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판결에 따라 동방신기 3명 측은 SM을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의 기자[zzam@joongang.co.kr] ▷ 아이비, 2년 만의 쇼케이스서 눈물 ▷ 2NE1 공민지, 고모할머니 공옥진 여사와 함께한 사진 공개 ▷ 장동건·김아중, 저축유공자 표창 받아 ▷ '대형 신인' 디셈버, 베일 벗었다 ▷ [온탕 & 냉탕] 노바디 빌보드 진입 VS 김남길 낙마 사고 ▷ 박예진 "'패뻏' 하차는 이미 준비했던 일" ▷ 최아진 "이민호 오빠랑 친해둘 걸 그랬어요"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